

특집

□ 85년 회고와 전망 □

국내石油 製品의 價格 算定방식

廉 明 天

(동자부 석유정책과 사무관)

I. 머리말

85년은 『국제원유가는 내리는데 왜 國內油價는 내리지 않는가?』에 대한 반복적인 질문과 해명이 계속된 한해였다. 거의 요식화된 답변을 계속하여야 되는 담당실무자로서 國內油價조정 방식과 국제원유가 換率·국제금리 등 주요 가격 변동 요인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 지면을 마련하였다. 지극히 일반적이고 개요적인 설명이지만, 國內油價 조정의 과정과 油價구조를 이해하는데 조금의 도움이이나마 되기를 바란다.

II. 平均原價와 複合單價의 대응

국내석유제품의 價格산정 방식은 정부가 통제하는 다른 工產品 價格의 산정방식의 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우선 原油를 도입·정제·판매하는데 따라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사정한후 精油5社의 평균치로 價格에 반영하게 된다.

精油社가 실제로 사용한 비용은 각 항목별로 볼 때, 5社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날 수도 있고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價格에 반영된 5社 평균치보다 비용이 높게 나타난 회사는 그 비용을 價格으로 실현되는 수익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손을 보게 된다.

그 반대의 경우는 실제 발생비용보다 높은 수익이 價格에 의하여 실현되므로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5社 평균비용의 油價반영 개념은 자동적으로 각 정유사에게 비용절감유인을 부여하게 된다.

물론 1~2년 결손을 보았다 해서 어떤 회사가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화 될 경우 별도의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그러나 5社 평균비용 개념으로 價格에 반영된다고 해서 실제 발생된 모든 비용이 모두 5社 평균비용을 산출하는데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사에 비해 과도한 비용이 소모되었거나 특정 회사의 개별적인 요인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原油의 도입 정제와 무관하게 소요된 비용은 그 비용이 반영됨으로 하여 5사 평균치가 과도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미리 그 회사의 실적비용에서 제거한 후 5社 평균치 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산정된 각 비용항목의 합계가 정유공장에서 출하되는 石油製品의 원가가 된다. 이원가 주요항목은 原油導入價(FOB), 운임, 관세 등 각종 부대비용, 금융비, 정제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해서 산정된 석유제품의 原價는 가격에 의하여 판매수익으로 회수되어야 하므로 각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B-C油, 나프타, LPG 등) 가격에 배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석유제품은 連產品인 관계로 각 석유제품의 종합적인 원가는 산정될 수 있으나, 각 제품별 원가의 산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령 200kg짜리 소가 200만원이라 하면 최고기 1kg당 평균가는 1만원이라고 쉽게 산정이 되겠지만, 만약 소의 등심이나 혹은 뒷다리 1kg의 원가는 얼마라고 산정하기가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일단 산정된 석유제품의 원가에 각 석유제품의 평균가격(복합단가)을 일치시켜 놓고 각제품중 수요측면에서 고급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소 비싸게, 저급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소 싸게 가격을 제품별로 배분하게 된다.

여기에는 몇가지 정책사항이 가미되는데 국내 산업용 연료인 B-C油, 서민용 취사연료인 등유, 대중교통수단의 연료인 경유는 낮게 유지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휘발유나 LPG의 가격이 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외국에 비해 높은 원인은 고율의 소득세에도 있으나 여기에도 있다.

여하튼 정부는 각 정유사에서 정제, 출하되는 각 석유제품가격의 平均複合單價가 각 석유제품의 평균원가와 일치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회사별로 따져보면, 평균원가와 複合單價가 꼭 일치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5사 전체로 보면, 평균원가와 복합단가는 일치되도록 油價가 관리되고 있다.

만약에 어떤 요인이 있어 평균원가가 복합단가보다 높아질 경우 복합단가를 평균원가수준에 맞춰 올려주어야 된다. 이때는 油價의 인상이 될 것이다. 이 경우 평균원가 항목중 정부가 통제 가능한 일부 항목(기금이나 관세)을 움직여 평균원가수준을 복합단가 수준으로 맞춰주는 수도 있다. 이때는 油價

인상 없이도 유가인상요인을 해소하는 결과가 된다. 83. 3 국제유가의 대폭하락(5달러/B, AL34달러~29달러/B)에 따른 국내유가 조정이유, 환율상승 등에 의한 국내유가부담요인이 상당규모로 발생되었음에도 당시 유보했던 원유관세 및 기금의 조정으로 현재까지 국내유가를 당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例이다. 또 비용항목의 금액이 감소되어 평균원가가 복합단가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위의 반대원리가 적용된다.

Ⅲ. 國內油價 변동의 주요요인

국내油價변동은 정부의 最高價 결정고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부의 가격결정은 기본적으로 평균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비용항목의 변화에 따라 이뤄지고 각 비용항목의 변화의 요인은 첫째가 國際原油價, 그 다음이 換率이고 세번째가 국제기금이다. 기타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은 정제비용의 변화와 基金·關稅등 정부부문 비용의 변화, 그리고 유통단계 수수료의 변화이다.

1. 換率의 변화

국내油價 변동요인중 換率의 요인이 지대한 것은 석유가 국내에서는 원화를 받고 판매되나 原油를 구입해올 때 원유대의 지불은 달러로 이뤄지고 이 달러를 구입하는데는 제품이 국내판매로 얻어진 원화가 동원되기 때문이다. 평균원가의 총 비용항목중 정제비 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의 항목이 달러화로 표시가 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부문은 평균원가의 9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환율변동의 영향을 직접 받는 부문이다.

原油의 도입에는 단기국제신용(유전스)을 사용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관례외에도 연간 원유도입금액이 60억달러에 상당한데 반하여 국내 총외환보유고는 70억달러 수준에서 유동하고 있어서 원유도입에 유전스 사용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원유도입유전스의 사용은 연중 계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형식상은 단기채무이나, 사실상은 장기채무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것은 마치 저수지의 물처럼 계속 물이 흘러들어오고(차입) 계속 흘러나가도(상환) 저수지의 수면

이 일정수준을 항시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다. 換率이 변동시 저수지의 물처럼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한, 유전스 잔고는 달러기준으로는 불변이라 할지라도 원화표시 금액은 변동이 있게 된다. 換率이 상승시 換差損이 발생하고 하락시에는 換差益이 발생한다.

흔히 換率이 1% 상승시 약 1.3%의 油價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는데 평균원가 항목중 직접 환율의 영향을 받는 부문이 93%이므로 이 부분이 약 0.9%의 유가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유전스 잔고에 대하여 발생되는 換差損이 약 0.4%의 油價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것은 환율이 내릴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이다.

國內油價에 영향을 미치는 換率이란 원貨로 표시되는 對美 환율(W/\$)이다.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의 약세가 곧바로 국내유가의 인하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사고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80년 변동환율제 실시 이후 4분기 단위로 볼 때 원화표시 對美換率은 국제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등락과 관계없이 4~14%씩 꾸준히 상승하여 왔다. 달러가 약세일때는 완만하게, 달러가 강세일 때는 달러貨의 강세 이상으로 급등하여 왔다. 따라서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약세는 원화표시 대외환율이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상승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주지는 못한다.

금년 9월 이후 달러換率이 오르지 않고 890~895원/\$ 수준에서 계속 유동중이다. 이러한 현상은 83년말에서 84년초 사이에도 있었으나, 換率상승 실적은 83; 6.3%, 84; 4%의 상승을 기록하였다.

2. 國際原油價의 변화

환율의 변화와 함께 國內油價 변동요인으로 중요한 또 한가지 요인은 國際原油價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OPEC 公式價가 국제석유시황과 국내도입 가격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거의 절대적인 지표로 활용된 적도 있었으나, 요즘처럼 OPEC가 국제석유시장에 위력을 잃고 現物市場의 중요성이 커진 시점에서는 OPEC 공식가의 변화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현물시장가격은 기왕

의 시장실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미 그 가격은 국내도입가격에 이미 반영되고 있다. 요즘의 몇몇 일간신문이 「국제原油價 하락」이라는 말대신 「국제原油價약세」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적절하다.

가령 OPEC 회의에서 OPEC산유국의 전유종을 1\$/B 인하하기로 하였다 하면, 과거에는 국내도입단가도 거의 1\$/B 인화된 가격으로 나타났다.

83. 3. OPEC 회의에서 기준유가(A/L)를 5달러 인하하였을 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4.76\$/B의 인하효과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다.

85. 1 OPEC 총회에서 다시 基準油價(A/L)를 1\$/B 인하하였을 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0.40\$/B에 불과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OPEC국가 자체가 OPEC의 결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 OPEC 公式價의 적용을 받지 않는 現物市場 비중이 현저히 커졌기 때문이며, 셋째 非OPEC국가들의 시장세어가 급격히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國際原油價의 변동을 예측 산정하기가 지극히 어렵게 되었고, 더구나 국내도입 단가의 등락폭에 대해서는 각 유종별로 해당산유국의 개별적인 동태를 하나하나 분석하지 않고서는 그 추정이 불가능한 실정이 되었다.

국내도입단가의 하락폭을 알 수 있다면 國內油價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국내 평균원가중 원유도입가(FOB)와 원유도입가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관세, 방위세 등 부대비용의 비중에 따라 결정되는데, 약 85% 정도가 된다. 따라서 원유의 국내 평균 도입단가가 1% 하락시 약 0.9%의 국내유가 인하요인이 발생한다.

3. 國際金利의 변화

국제금리의 중요성은 原油價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편이다. 국제금리의 변화는 원유도입시 사용하는 유전스에 대한 이자 지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유전스 이자가 平均原價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3%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제금리가 1% 포인트 정도 움직여도 국내유가 영향은 0.25% 미만에 불과하다.

4. 其他要因의 변화

(1) 精製費用의 변화

정제비용의 상승은 곧 平均原價의 상승을 가져 오나, 정부는 소비자부담증가의 곤란 때문에 精油社 자체의 경영개선과 원가절감을 통하여 흡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輕質製品 수요증가와 重質製品의 수요감퇴에 따른 정제시설 고도화와 低公害 제품생산으로의 전환, 기타 장래의 석유대체에 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투자이윤의 축적이 긴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 경우 물가, 임금상승에 따른 최소한도의 精製費의 상승은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였으나, 그 부담은 정부의 통제가격제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로 등장한다. 여기에서 정부의 정책판단이 요구되며, 이것은 시대적 상황과 그 정부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 본다.

(2) 基金과 關稅

基金과 關稅가 油價부담의 완충재원으로 쓰인 것은 지난 83년 4월부터이다. 당시 국제원유가의 하락에 따른 國內油價 인하폭의 70%를 基金·關稅로 징수하여 유보하고 30%만 國內油價의 인하에 사용하였다. 83년의 6.2%, 84년의 4%, 85년의 7.9%의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석유제품가격을 인상함이 없이 지금까지 버티어온 것은 70%의 基金·關稅 징수액을 그때 그때 조금씩 줄여나가 환율상승에 따른 平均原價의 증가를 완충하여 복합단가 수준으로 유지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基金이나 關稅등 정부부문비용의 증감은 직접적으로 平均원가의 증감과 관계된다. 이 제도는 유가관리상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며, 그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본다.

(3) 유통단계의 수수료

위에서 설명한 여러 비용항목의 집체인 平均原價 수준으로 複合單價가 결정되면 이 가격이 精油社에서 각 대리점이나 직매처에 인도하는 가격이

된다(공장도가격). 직매처의 경우는 공장도가격이 최종소비자가격이 되겠으나, 대리점·주유소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까지 물건이 도달되는 경우에는 대리점과 주유소의 수수료가 가산되며, 이 부담의 일부 혹은 전부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 따라서 유통단계의 수수료의 증감은 精油社의 수익 즉 복합단가와와는 관계가 없으나, 최종소비자의 부담과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게 된다.

지난 80년도 이래 이 부문은 변경이 거의 없이 고정된채 지금까지 적용되어 오고 있어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더구나 유통질서의 확립, 유통구조의 현대화 안전대책의 강구 등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도, 대부분의 유통업체가 중소기업 혹은 소규모의 영세기업임을 감안한다면 유통수수료의 현실화는 긴요한 문제이나 이 역시 소비자 부담으로 귀착된다는데 정책실무자의 고충이 요구되고 있다.

IV. 價格調整 시정과 해소기간

실제적인 價格조정은 위에서 설명한 제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價格이란 미래에 적용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추정이 어차피 실제와 일치할 수 없는 이상 가격조정의 순간부터 가격에 반영된 제 비용항목은 실제와 크든 적든 괴리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다고 수시로 그때 그때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경제원리에는 합당하겠으나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고 사회일반의 통념에도 어울리지 않게 된다. 따라서 平均원가와 복합단가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때까지는 가격조정을 미루게 된다.

가령 79, 80년처럼 수시로 國際原油價가 급등할 경우에는 平均원가가 복합단가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여 단기간내의 가격조정이 불가피해지나, 요즈음처럼 換率은 상승하나, 國際原油價는 약세화하는 경우는 상호의 비용항목간에 平均원가 인상부담이 상쇄되어 복합단가와와의 乖離는 크지 않게 되므로 油價調整 시점은 계속 지연되게 된다.

따라서 어느 기간 동안 인상 요인이나 인하 요인을 안고 오다가 일정시점에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조정 시점에서 보면, 기 발생되어 안고 오던 결손이나 이익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게

된다.

油價 인상요인이 여러 비용항목의 변화를 볼 때, 어느 시점에서 1%에 해당할 경우에도 기결손의 해소를 위해 1.5%나 혹은 그 이상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조정시점을 무리하게 지연시킬 경우 기결손 부담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油價조정요인도 점점 커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조정시점을 지연하는데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이것은 결손발생시뿐만 아니라, 油價인하요인이 축적되어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또 油價조정의 폭은 기축적된 결손이나 이익의 해소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가령 현시점에서 油價 인상요인이 1%이고, 기결손의 해소소요금액이 500억원으로 1년에 해소시 1%의 油價인상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기결손을 만약 1년에 해소한다면 2%의 油價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기결손을 2년에 걸쳐 해소한다면 1.5%의 油價인상요인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6개월에 걸쳐 해소할 경우, 油價인상요인은 3%로 상승된다. 간단한 논리이지만 이것은 연중 4~5월과 6-7월, 그리고 10월 이후에 따라 서로 다른 인상요인이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일반적으로 기결손의 해소는 연간 개념으로 해소시켜주는 것이 현실적이다. 연초에는 이 개념이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말까지를 해소기간으로 잡는 것이 보다 현실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해소기간은 12개월에서 11개월, 10개월, 9개월... 식으로 자꾸 줄어들고, 인상요인은 별 다른 요인 변화없이도 자꾸 늘어나게 표시가 된다.

따라서 5월이 지나면 연말까지를 기결손 해소기간으로 잡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고, 향후 1년을 해소기간으로 잡아 인상요인을 계산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油價인상요인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꼭 같아도 뚝 떨어져 표시가 된다.

다시 10월이 가까이 오면 다시 내년 연말까지를 기결손해소 기간으로 잡는 것이 의미있는 인상율을 구할 수 있게 되어 14개월, 13개월, 12개월 등을 해소기간으로 잡아 인상율은 더욱 낮아지게 표시가 된다.

이를 결과만 두고 보는 분들은 왜 인상요인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느냐고 불평하겠지만, 고무줄의 무게 자체는 그대로 이므로 결론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단지 油價인상요인을 그때 그때 알기쉽게 설명하고자 하면, 연초에 해소기간을 정확히 1년으로 잡아 내년 2월까지 혹은 3월까지를 해소기간으로 잡아 계산하는 것이나, 연말에 해소기간을 내년10月末 혹은 11月末까지 잡아 계산하는 것은 담당 실무자나 신경 쓸 일이고 일반적인 연말 개념에 익숙한 일반인들에게는 오히려 복잡함만 가중시키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그때 그때의 각 비용요인의 불변을 가정하고 기결손의 해소기간을 두고 이야기를 해왔으나, 실제로는 매시점의 각 비용요인은 수시로 변화되므로 실제 문제는 이를 감안하여 종합적인 유가조정요인이 산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조정요인에 따라 복합단가가 조정되면 이에 따라 전술한 바와 같이, 각 제품에 가격을 배분, 제품별 인상, 인하율은 결정하게 된다.

V. 맺는 말

시장경제하에서 가격은 財貨나 용역의 가치를 재는 척도가 되고 수급을 조절하여 각 수요처에 배분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油價처럼 가격이 정부의 告示價로 규제되어 있는 경우價格수준의 결정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부담배분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그 가격수준의 결정에는 사회적 형평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어차피 정부의 정책으로 실현되는 이상 종합적인 가치판단이 요구된다.

앞에서 언급된 허다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石油價格결정에 통제를 가하고 있는 것은 국내 석유제품가격산정에 형평의 원리와 종합적인 가치판단이 경제적인 합리성보다 더 중시되는 우리 경제의 환경에 기인한다. *

